

KOREA TESTING RESEARCH INSTITUTE

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TOP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무선기기 KC 적합성평가 2020.11.26

목 차

-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
 - **Ⅲ** LoRa 적합성평가 절차
 - III LoRa 시험항목
- ₩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



제품 판매 전 적합성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시험, 등록 · 인증하는 제도

국내 전파환경·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(기술기준)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



<무전기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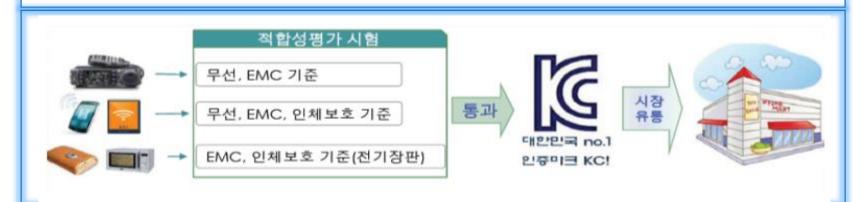
<전화기>



<노트북>



<냉장고>





위해도(전파 혼·간섭, 망 위해 및 인명안전)를 고려한 인증 유형 분류

인증구분	분류기준
적합인증	 ✓ 전파 혼 · 간섭 위해,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,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(예 : 레이다, 휴대폰, 전화교환기)
적합등록	✓ (지정시험기관)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·간섭 위해, 인명안전과 인체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(예:컴퓨터, 모니터, 조명기기, 전동기기)
식입등록	✓ (자기시험)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,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(제조자)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(예:계측기, 산업용 컴퓨터)
잠정인증	✓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,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,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식인증을 받도로 민원편의를 고려한 제도



[관계 법령] 전파법 제 58조의 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
-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기자재(이하"방송통신기자재등 "이라 한다)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(이하 "적합성평가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(이하 "적합성평가"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 - 1.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
 - 2.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
 - 3.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
 - 4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
 - 5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1조·제68조·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
 - 6. 「방송법」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
 - 7.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



적합성평가 관련 전파법규 세부 규정

전파법	전파법시행령	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
제 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 제 58조의3(적합성평가의 면제) 제 58조의4(적합성평가의 취소 등) 제 58조의5(시험기관의 지정 등) 제 58조의5(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) 제 58조의7(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) 제 58조의8(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) 제 58조의9(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) 제 58조의10(복제, 개조, 변조 등의 금지) 제 58조의12(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) 제 69조(수수료) 제 71조의2(조사 및 조치) 제 84조 ~ 제86조(벌칙) 제 88조(양벌규정) 제 8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제 93조(과태료의 부과, 징수)	제 77조의2(적합인증) 제 77조의4(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) 제 77조의4(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) 제 77조의5(적합성평가의 표시) 제 77조의6(잠정인증) 제 77조의7(적합성평가의 면제) 제 77조의8(적합성평가의 면제) 제 77조의9(시험기관의 지정 등) 제 77조의10(전문심사 기구 등) 제 77조의11(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) 제 77조의11(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) 제 77조의13(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) 제 77조의14(표시방법) 제 97조의2(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) 제 97조의3(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수수료) 제 97조의3(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수수료) 제 93조(과태료의 부과, 징수) 제 117조의2(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) 제 117조의3(조사 및 조치의 절차) 제 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 제 119조(시정지시 등) 제 123조(권한의 위임, 위탁) 제 12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	제 1 장(총칙)(제조에서제4조) 제 2 장(적합인증)(제5조에서제10조) 제 4 장(잠정인증)(제11조에서제14조) 제 5 장(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)(제15조에서제17조) 제 6 장(적합성평가의 면제)(제18조에서제20조) 제 7 장(조사 및 조치)(제22조에서제22조) 제 8 장(보칙)(제23조에서제28조)



적합성평가 세부 기준

구분	적합성평가기준	관련법령	관련 세부기준
공통기준	✓ 전자파적합성	✓ 전파법제47조의3제1항	✓ 전자파적합성 기준
	✓ 무선 기술기준	∕ 전파법 제 37조, 제 45조	 ✓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✓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✓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✓ 간이무선국등 그 밖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✓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
개별기준	√ 방송 기술기준	✓ 방송법 제79조	✓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
	✓ 유선 기술기준	 ✓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8조 ✓ 전기통신사업법 제 61조 · 제 68조 · 제 69조 ✓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법 제14조의 2 	 ✓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✓ 단말장치 기술기준 ✓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기기 ✓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
	✓ 전자파인체보호	✓ 전파법 제 47조의 2	✓ 전자파인체보호



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
- □ 무선 적용 기술기준
 - ✓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RFID/USN 등의 무선설비 제4항
 - ✓ RFID용 무선기기(900 MHz 주파수 대역)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- □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의 고시 별표1(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)

대상기자재		적합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적합성평가 유형				
		과 기 등	파 무선 성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	적합	적합등록		기기	기타 사항
		전자파 적합성			전자파 흡수율	전자파 강도	식됩 인증	지정 시험 기관	자기 시험	부호	3137 10
	1) 900짼 주파수 대역	0	0		0		0			RFID1	
마. RFID용 무선기기	2) 433째 주파수 대역	0	0					0		RFID2	
	3) 13.56吨 주파수 대역	0	0					0		RFID3	
바. USN용 무선기기	 917mb ~ 923.5mb 주파수 대역 	0	0					0		USN1	
	2) 940.1Mb ~ 946.3Mb 주파수 대역	0	0					0		USN2	
	3) 1.7대 주파수 대역	0	0					0		USN3	
	4) 940.1版 ~ 9443版 주파수 대역 (간섭희피 기술 등 사용)	0	0					0		USN4	

✓ 4) 940,1 MHz ~ 944,3 MHz 주파수 대역(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) 항목 2019,12,05 신설



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
- □ USN용 무선기기(940.1 MHz ~ 944.3 MHz 주파수 대역(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))
 - ✓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제6항
 - √ 940 MHz 대역에서 다수의 USN 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존기술 추가하면서 기술기준 신설
 - ✓ 기존 940.1 ~ 946.3 MHz 대역 기술기준은 점유시간 짧고 수신선택도 요구사항 때문에 활용이 제한됨 〈차이점 비교〉

시험항목	제8조제5항 USN	제8조제6항 USN(신설)
주파수대역	(940.1 ~ 946.3) MHz	(940.1 ~ 944.3) MHz
점유주파수대폭	(940.1 ~ 946.3) MHz 주파수 대역 이내	200 kHz 이내
채널전력	실효복사전력은 200 mW 이하	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200 mW 이하
점유시간	특정 채널에서 임의이 1시간 동안에 0.1 % 이내	송신시간 합의 임의의 1분 동안에 5% 이내
기타	수신선택도	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



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
- □ USN용 무선기기(917 MHz ~ 923.5 MHz) 주파수 대역
 - ✓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제4항
- □ 제출서류
 - ✓ ① 대리인지정서(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) ②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
 - ③ 안테나 자료(방사패턴도 및 Peak Gain 값 기재) ④ 사용자설명서
 - ⑤ 회로도 및 부품배치도(미제출시 업체 보관)
 - ※ 승인기관 사후 관리로 제출 요청시 회로도 및 부품배치도 미제출시 미인증품으로 간주
 - ※ 사용자설명서는 제품개요. 사양. 구성 및 조작방법 및 기자재 별 표기해야 할 문구 포함
-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
 - ◆ ① 사용자설명서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대리인지정서
 - ⑥ 적합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⑦ 기타 변경신청 서류
 - ⑦ 회로도(EMC 기준 적용 기자재만 생략 가능)



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
□ 사용자설명서

✓ 산업, 과학,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, 멀티미어기기류(업무용) 설명서에 하기 안내문 포함

사용자안내문

사 용 자 안 내 문

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.

※ 사용자 안내문은 "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"에만 적용한다.

※ 단, 제품이 무선기능외에 <u>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</u> 기기일 시(무선기능 제외, 별도 동작 있을시)

예) 산업용 유무선 네트워크 카메라, LoRa Gateway(랜통신 가능한 경우)

✓ USN용 무선기기(917 MHz ~ 923.5 MHz) 주파수 대역 사용기기의 경우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 하기 문구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

"이 기기는 사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며, 타 기기로 부터 유해한 혼신을 받을 수 있음"



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
- □ (신규)임의 기자재 명칭 허용(2010.10.20 부터)
 - ✓ 기존 적합등록 무선기기 고시에서 정한 기자재 명칭으로만 사용 가능
 - ✓ 변경 후 : 적합등록 무선기기(무선단독기기) → 임의명칭(WiFi, LoRa 등) 허용
 적합등록 무선기기 + EMC기자재 → 주기능 명칭 허용(Ex. Bluetooth+세탁기 → 세탁기)
- □ LoRa 적합성평가 시험 항목
 - ✓ 무선, 무선EMC는 필수
 - ✓ 일반EMC(일반EMC는 무선기능 제외, 별도 동작 있을시)
- □ 제출시료
 - ✓ 무선 : ①주파수 설정 ②출력 설정 ③Data Rate(WiFi, BT) 설정 ④변조, 무변조(CW) 설정 ⑤수신 모드 설정
 - ✓ 무선EMC: 무선 통신 상태 모니터링 가능해야함. 수신 가능 주변기기 같이 제공
 - ✓ 일반EMC: 완제품 제공



적합등록 대상 기자재

□ 무선 시험 샘플 예시



- ✓ 장착된 안테나 제거 후 SMA 타입 케이블링(커넥터 타입 안테나의 경우 해당 없음)
- ✓ PC에서 컨트롤 가능한 인증시험용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PC에서 구동 가능하게 Jig 연결되어야 함
- ✓ 배터리 구동 제품일 경우 직류전원장치 연결 가능하게 +, 단자 구분 해주어야 함(정격전압, +10%, -1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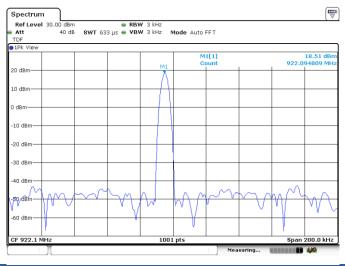


주파수허용편차

- □ 실제 발사되는 주파수와 할당된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되는 편차
 - ✓ 기준치: ± 40 x 10⁻⁶ Ex. 지정 주파수 922.1 MHz 일시 922.1 MHz x (± 40 x 10⁻⁶) = ±(36 884 Hz)
 - ✓ 시험 구성도

수검기기 의사부하 신호 분석기

- ① 수검기기와 신호 분석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무변조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신호 분석기에서 측정된 값에서 지정주파수를 빼줌



922.094809 MHz - 922.1 MHz = - 5 191 Hz

※ 지정주파수인 922.1 MHz 에서 − 5 191 Hz만큼 벗어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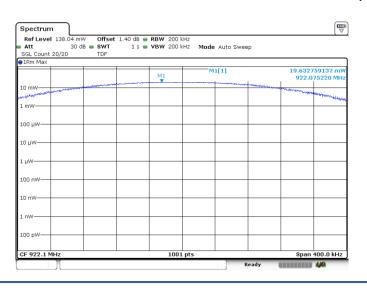


복사전력

- □ 제품에서 발사되는 RF 출력
 - ✓ 기준치: 3 mW, 10 mW, 25 mW, 200 mW(사용되는 주파수에 따라 상이)
 - ✓ 시험 구성도

수검기기 의사부하 신호 분석기

- ① 수검기기와 신호 분석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변조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신호 분석기의 최대 측정값으로 이동.



※ 업체에서 제공한 안테나 자료를 통하여 절대이득값 포함. 측정값+안테나 절대이득(1.40 dBi) = 복사전력(19.63 m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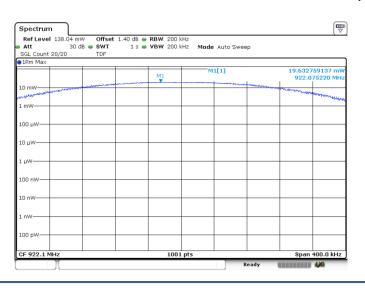


복사전력

- □ 제품에서 발사되는 RF 출력
 - ✓ 기준치: 3 mW, 10 mW, 25 mW, 200 mW(사용되는 주파수에 따라 상이)
 - ✓ 시험 구성도

수검기기 의사부하 신호 분석기

- ① 수검기기와 신호 분석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변조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신호 분석기의 최대 측정값으로 이동.



* 업체에서 제공한 안테나 자료를 통하여 절대이득값 포함. 측정값+안테나 절대이득(1.40 dBi) = 복사전력(19.63 m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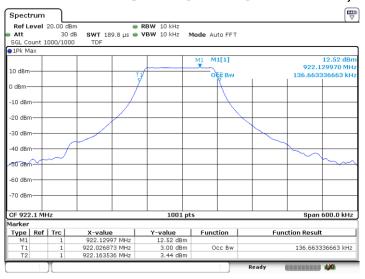


점유주파수대역폭

- □ 전체 RF출력의 99 % 부분의 하한, 상한 주파수간의 대역폭
 - ✓ 기준치: (917 ~ 923.5) MHz 이내, 즉 6.5 MHz 이내
 - ✓ 시험 구성도

수검기기 의사부하 신호 분석기

- ① 수검기기와 신호 분석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변조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신호 분석기의 OBW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.



- 하한주파수(T1): 922,026873 MHz
- 상한주파수(T2): 922,163536 MHz
- ※ 하한, 상한 주파수 모두 기준치 범위에 만족.

Occ BW(Occupied Bandwidth) = 136.66 kHz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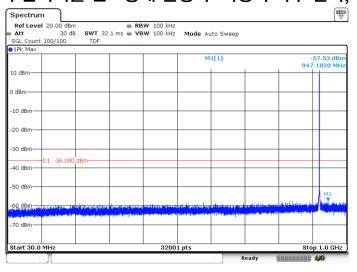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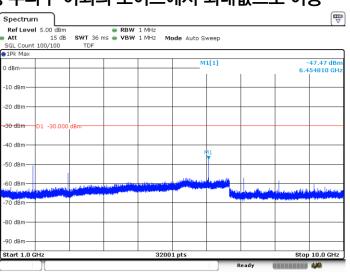
불요발사

- □ 변조상태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노이즈
 - ✓ 기준치: 1 GHz 미만 -36 dBm, 1 GHz 이상 -30 dBm
 - ✓ 시험 구성도

수검기기 의사부하 신호 분석기

- ① 수검기기와 신호 분석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변조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지정 주파수 이외의 노이즈에서 최대값으로 이동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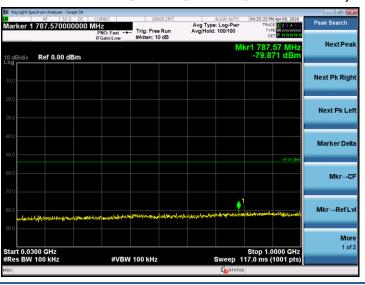


부차적전파발사

- □ 수신상태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노이즈
 - ✓ 기준치: 1 GHz 미만 -54 dBm, 1 GHz 이상 -47 dBm
 - ✓ 시험 구성도

수검기기 의사부하 신호 분석기

- ① 수검기기와 신호 분석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수신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지정 주파수 이외의 노이즈에서 최대값으로 이동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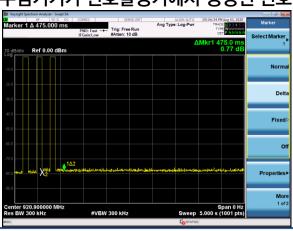


송신전 신호감지(LBT)

- □ 송신전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으로 다른신호가 감지될 시 송신을 중단
 - ✓ 기준치: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-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
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 이상 휴지할 것
 - ✓ 시험 구성도



- ① 수검기기를 시험구성도와 같이 연결
- ② 수검기기를 변조상태 설정 후 지정 주파수 발사, 신호발생기를 사용하여 지정 주파수 신호 발생시킨 후 수검기기가 신호발생기에서 생성된 신호 감지 여부 확인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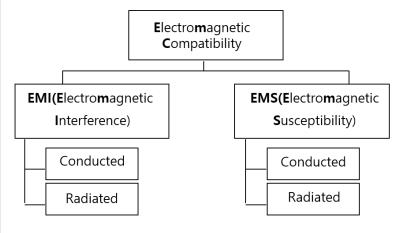
■ 왼쪽: 0.4초 송신 중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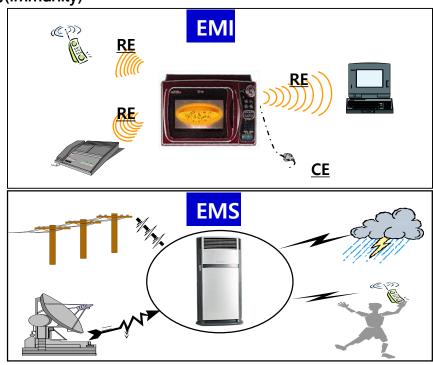
■ 오른쪽 : 4초 휴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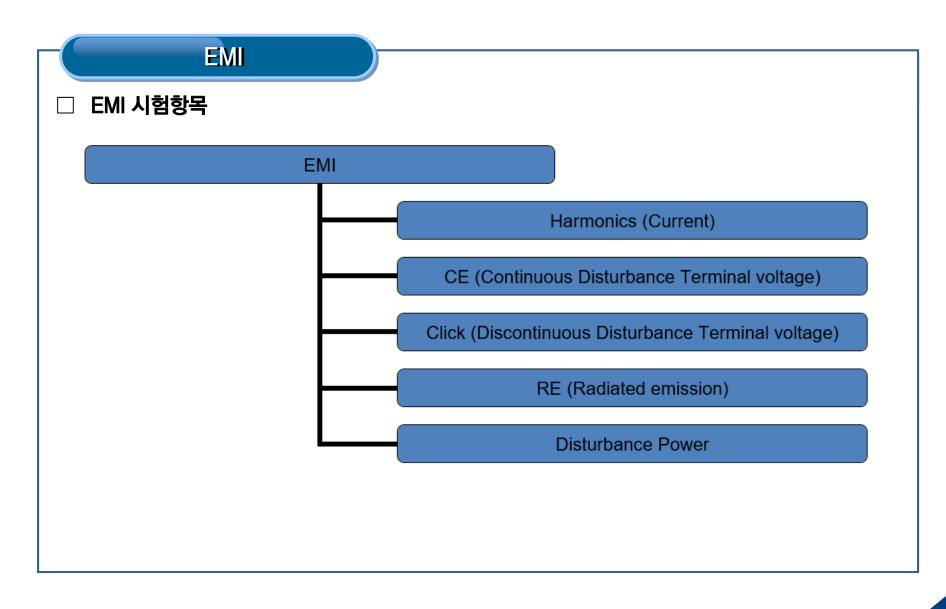
EMC?

- ☐ EMC(Electromagnetic Compatibility): 전자파 양립성
 - ✓ EMI(Electromagnetic Interference): 전자파 장해(Emission)
 - ✓ EMS(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): 전자파 내성(Immunit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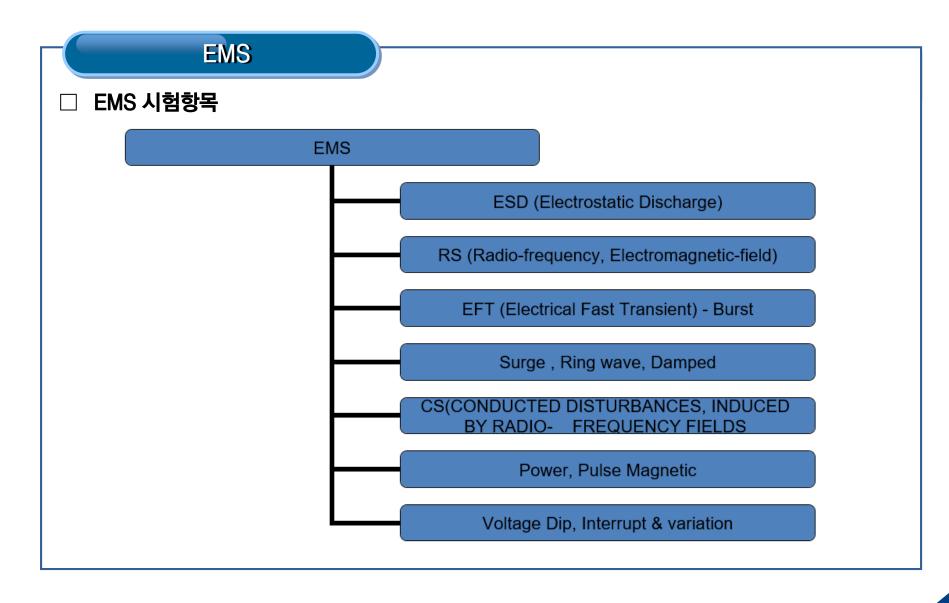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OATS

- □ OATS? Open Area Test Site(야외시험장)
 - ✓ 막힌 환경이 아닌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측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물리적인 것은 대지뿐이고, 주위에는
 물리적 반사물 등이 없는 것으로 EMI측정 규격 속에서 다음의 2가지로 정의하고 있다.
 - ① 물리적 환경조건 : SITE 구조의 필요 조건 (SITE 조건)
 - ② SITE ATTENUATION: SITE의 전파 전달 특징 (SITE 평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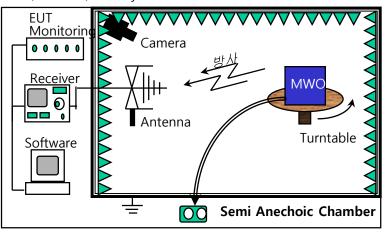


Anechoic Chamb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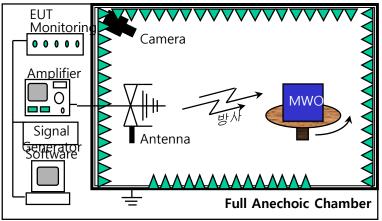
□ Anechoic Chamber? 전자파 무반사실

✓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측정 효율이 떨어지는 야외시험장을 대용할 목적으로 바닥면(Ground Plane)을 제외한 모든 벽면을 전파 흡수체 및 금속판으로 제작 된 전파암실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전천후로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.

EMI (Emission) Test System



EMS (Radiated Immunity) Test Syste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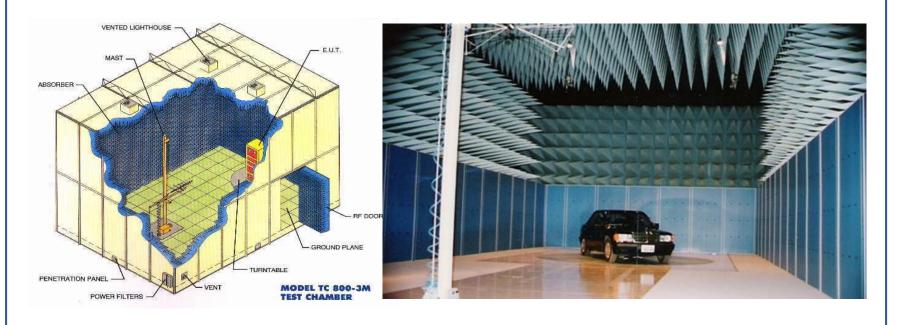




Anechoic Chamber

□ Anechoic Chamber? 전자파 무반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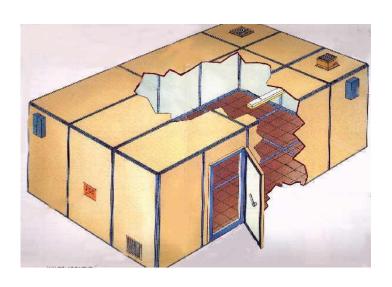
✓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측정 효율이 떨어지는 야외시험장을 대용할 목적으로 바닥면(Ground Plane)을 제외한 모든 벽면을 전파 흡수체 및 금속판으로 제작 된 전파암실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전천후로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.





Shield Room

- □ Shield Room? 전자파 차폐실
 - ✓ 외부 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금속판으로 전체 벽면을 둘러싼 시험장
 - ✓ Conducted Emission / Conducted Immunity 측정, Radiated Power 측정











무선EMC 샘플 조건

- □ 무선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
 - ✓ 무선 제품의 통신 상태 검증 할 수 있는 절차
 - ✓ 무선 제품의 통신 상태에 대한 제조자의 판정기준







전자파장해방지(EMI)항목

□ KN 301 489-1(무선기기 공통 규격)

			KN 301		
시험항목 적	적용	고정용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 (예 : 기지국 기기)	차량용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 (예 : 차량용 기기)	휴대용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 (예 : 휴대용 기기)	489-1의 참 고절
방사성 방해	본체 및 보조 기기의 함체 (주1)	적용	적용	적용	8.2
저도서 바췌	DC 전원 입/출력 포트	적용	적용	해당사항 없음	8.3
전도성 방해	AC 전원 입/출력 포트	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8.4
고조파 전류 방해	AC 입력 포트	미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8.5
전압 변동 및 플리커	AC 입력 포트	미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8.6
전도성 방해	통신 포트	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8.7

(비고)

^{1.} 전파법 제47조의3 및 전파법시행령 제67조의2 외의 조항에 따라 무선기기 송신상태에서 방사성 장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본체의 송신상태에서 방사성 장해 측정을 면제함



전자파장해방지(EMI)기준

□ KN 301 489-1(무선기기 공통 규격)

✓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

주파수 범위	준첨두치 허용기준 [dB(μV/m)]: 10 m				
[MHz]	통신센터 전용기, 가정용 외	일반 무선기기			
30 ~ 230	40	30			
230 ~ 1 000	47	37			

주파수 범위		가정용 외 허용기준 n)]: 3 m	일반 무선기기 허용기준 [dB(μV/m)]: 3 m		
[GHz]	첨두치	평균치	첨두치	평균치	
1 ~ 3	76	56	70	50	
3 ~ 6	80	60	74	54	

✓ 전도성 방해 전압허용기준

[AC 전원 포트, DC 전원 포트]

주파수 범위	통신센터 전용기기 허용기	l준, 가정용 외 [dB(μV)] ^{주1)}	일반 무선기기 허용기준 [dB(μV)]		
[MHz]	준첨두치	평균치	준첨두치	평균치	
0.150 ~ 0.500	79	66	66 ~ 56	56 ~ 46	
0.500 ~ 5.000	79	66	56	46	
5.000 ~ 30.000	73	60	60	50	

[통신포트]

주파수 범위	~	통신센터 전용기기 전압 허용기준, [dB(μV)] ^{주1)}		통신센터 전용기기 전류 허용기준 [dB(µA)] ^{주1)}		일반 무선기기 전압 허용기준 [dB(μV)]		일반 무선기기 전류 허용기준 [dB(μA)]	
[MHz]	준첨두치	평균치	준첨두치	평균치	준첨두치	평균치	준첨두치	평균치	
0.150 ~ 0.500	97 ~ 87	84 ~ 74	53 ~ 43	40 ~ 30	84 ~74	74 ~64	40 ~ 30	30 ~ 20	
0.500 ~ 30.000	87	74	43	30	74	64	30	20	



전자파내성(EMS)항목

□ KN 301 489-1(무선기기 공통 규격)

			시험 요구 조건					
시험항목	적용	고정용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 (예 : 기지국 기기)	차량용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 (예 : 차량용 기기)	휴대용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 (예 : 휴대용 기기)	KN 301 489-1의 참 고절			
방사성 RF 전자기장 (80 MHz ~ 1 GHz, 1.4GHz ~2.7GHz)	함체	적용	적용	적용	9.2			
정전기방전	함체	적용	해당사항 없음	적용	9.3			
전기적 빠른 과도현상/버스트, 공통모드	신호선, 통신선, 제어선, DC 및 AC 전원포트	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9.4			
전도성 RF 전자기장, 공통모드 (0.15 MHz~80 MHz)	신호선, 통신선, 제어선, DC 및 AC 전원포트	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9.5			
자동차 환경에서의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/버스트 및 서지	DC 전원 입력포트	해당사항 없음	적용	해당사항 없음	9.6			
전압 강하 및 순간 정전	AC 전원 입력포트	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9.7			
서지	AC 전원 입력포트, 통신포트	적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9.8			



전자파내성(EMS)기준

- □ KN 301 489-1(무선기기 공통 규격)
 - ✓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

내성시험명	적용포트	내성기준	단위	성능평가 기준	시험방법	
정전기 방전	함체포트	± 8(기중방전) ± 4(접촉방전)	kV kV	В	KN 61000-4-2	
방사성 RF 전자기장	함체포트	80 ~ 6 000 3 80	MHz V/m % AM (1 kHz)	Α	KN 61000-4-3	
	신호선 및 통신포트	± 0.5 5 / 50 5	kV(첨두치) Tr / Th ns 써z(반복주파수)		KN 61000 4 4	
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/버스트	입력 직류 전원포트	± 0.5 5 / 50 5	kV(첨두치) Tr / Th ns kt/z(반복주파수)	В	KN 61000-4-4	
	입력 교류 전원포트	력 교류 ± 1 kV(첨두치) 로 7,50 Tr / Thins				
	신호선 및 통신포트	1.2 / 50 ± 1 (선-접지간, 일반) ± 0.5 (선-접지간, 통신센터)	Tr / Th µs kV kV			
	입력 직류 전원포트	1.2 / 50 (8 / 20) ± 1	Tr / Th µs kV			
서지	입력 교류 전원포트	1.2/50 ± 2(선-접지간, 일반) ± 1(선-선간, 일반) ± 1(선-접지간, 통신센터) ± 0.5(선-선간, 통신센터)	Tr / Th µs kV kV kV kV	В	KN 61000-4-5	



전자파내성(EMS)기준

- □ KN 301 489-1(무선기기 공통 규격)
 - ✓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

내성시험명	적용포트	내성기준	단위	성능평가기준	시험방법
전도성 RF 전자기장	신호선 및 통신포트	0.15 ~ 80 3 80	₩z V(무변조, rms) % AM (1 ₭₺)	Α	KN 61000-4-6
	입력 직류 전원포트	0.15 ~ 80 3 80	₩z V(무변조, rms) % AM (1 ₭z)		KN 01000-4-0
	입력 교류 전원포트	0.15 ~ 80 3 80	배z V(무변조, rms) % AM (1 배z)		
전원주파수 자기장	표면단자	60 1	Hz A/m(rms)	Α	KN 61000-4-8
전압강하	입력교류 전원포트	100 0.5	% 감소 주기	В	
		100 1	% 감소 주기	В	KN 61000-4-11
		30 30	% 감소 주기	В	
순시정전	입력교류 전원포트	100 300	% 감소 주기	С	
자동차 환경에서의전기적 빠른 과도현상/버스트 및 서지	직류(DC) 12 및 24 전원 포트	펄스 1,2a, 2b, 4 ISO 7637-2에서 규정하는 시험레벨 Ⅲ	각 10회	В	ISO 7637-2
		펄스 3a, 3b ISO 7637-2에서 규정하는 시험레벨 Ⅲ	각 20분	А	ISO 7637-2



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규격

- □ 무선기기의 기자재 명칭으로 분류
 - ✓ KN 301 489-1은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격이며, 나머지 규격은 기자재에 따른 시험 조건 등이 명시
 - ✓ 해당 규격 외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KN 301 489-1 규격만 적용
 - KN 301 489-2(무선호출용 무선설비)
 - KN 301 489-3(특정소출력 무선기기)
 - KN 301 489-5(간이무선국)
 - KN 301 489-6(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)
 - KN 301 489-9(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)
 - KN 301 489-13(생활무전기)
 - KN 301 489-15(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)
 - KN 301 489-17(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)
 - KN 301 489-18(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)
 - KN 301 489-20(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)
 - KN 301 489-27(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)
 - KN 301 489-32(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)
 - KN 301 489-50(2G, 3G, 4G, 5G이동통신의 기지국, 중계기, 보조기기)
 - KN 301 489-52(2G, 3G, 4G, 5G 이동통신의 단말기, 보조기기)



일반사항

□ 제조사 제시 사항 일반

- ① 전자파적합성 시험 중 및 시험 종료 후에 평가될 무선기기의 기능
- ②기기에 수반되는 문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무선기기의 의도된 기능
- ③사용자 제어 기능 및 저장된 데이터와 소실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방법
- ④변조 타입, 시험에 사용될 전송의 특성(랜덤 비트 스트림, 메시지 포맷 등)
- ⑤시험을 위해 무선기기와 결합되는 보조기기(해당되는 경우)
- ⑥허용되는 최대 케이블
- ⑦ 복조기 바로 전단에 위치한 IF 필터의 대역폭 또는 등가 시스템 대역폭
- ⑧통신 링크가 설정되어 유지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(해당되는 경우)
- ⑨기기가 동작하도록 의도된 동작 주파수 대역
- ⑩피시험기기의 연속적인 시험을 예방하는 기기의 온도 한계
- ⑪기기가 사용되도록 의도된 환경
- ⑫채널화 되지 않는 기기에 대한 해당 송신기 신호의 점유 대역폭



일반사항

- □ 연속적인 통신 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
 - 무선기기 및 보조기기와 결합하여 시험되는 무선기기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시험 변조와 시험 배열 등이 적용
- □ 연속적인 통신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기기
 - 제조자는 전자파적합성 시험 중 및 시험 후 허용될 수 있는 최소 성능 레벨 또는 성능의 저하를 명시하여야 한다.
 - 제조자는 전자파적합성 시험 중이거나 시험 후에 성능의 실제 레벨 또는
 성능 저하를 평가하는 시험 방법을 정의
 - 작동하고 응답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(각 주파수 체류시간은 응답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.)



성능평가

□ 연속적인 현상을 위한 성능 평가 기준

- ✓ 시험 중이나 시험 후에도 기기는 의도된 대로 동작을 지속하여야 한다.
- ✓ 제조자에 의해서 명시된 허용할 수 있는 성능 레벨 이하가 되는 어떠한 성능의 저하나 기능의 상실도 허용될 수 없다.
- ✓ 시험 중에 피시험기기는 비의도적으로 송신하거나 실제 동작 상태나 저장 데이터 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
- ✓ 제조자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성능 평가 기준은 제품 설명서와 의도된 대로 사용 된다는 가정 하에, 사용자가 기기로부터 합리적으로상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 정될 수 있다.

□ 과도현상을 위한 성능 평가 기준

- ✓ 시험 후에도 기기는 의도된 대로 동작을 지속하여야 한다.
- ✓ 시험 중에는 성능의 저하가 허용된다. 그러나 실제 동작 모드 및 저장 데이터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✓ 시험 중에 피시험기기는 비의도적으로 송신하거나 실제 동작 상태나 저장 데이터 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
- ✓ 제조자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성능 평가 기준은 제품 설명서와 의도된 대로 사용 된다는 가정 하에, 사용자가 기기로부터 합리적으로상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 정될 수 있다.



성능평가

- □ 연속적인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기기를 위한 성능 평가 기준
 - ✓ 제조자는 내성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허용할 수 있는 성능 레벨 또는 성능의 저하를 확인하는 규격을 정해야 한다. 성능에 대한 규격은 제품 설명서에 포함 되어야한다.
- □ 독립적으로 시험된 보조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
 - ✓ 제조자는 내성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허용할 수 있는 성능 레벨 또는 성능의 저하를 확인하는 규격을 정해야 한다. 성능에 대한 규격은 제품 설명서에 포함 되어야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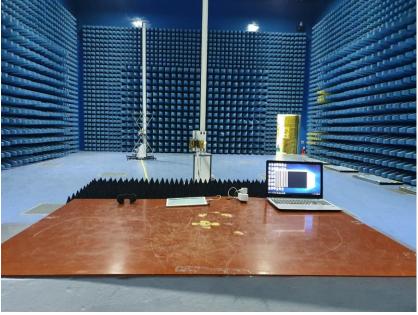


측정 사진

□ 방사성 방해

✓ 제품으로부터 의도되지 않게 방사되어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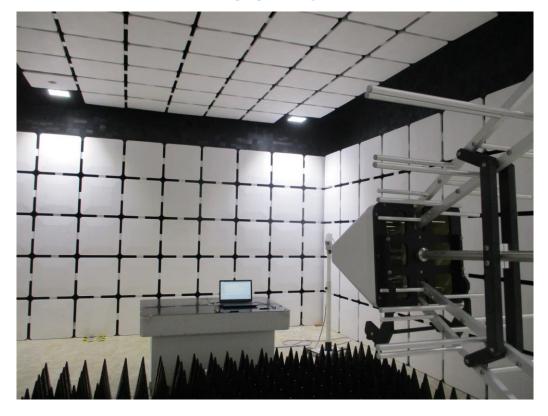
- □ 전도성 방해 전압
 - ✓ 제품의 전원선/통신선으로부터 전도되어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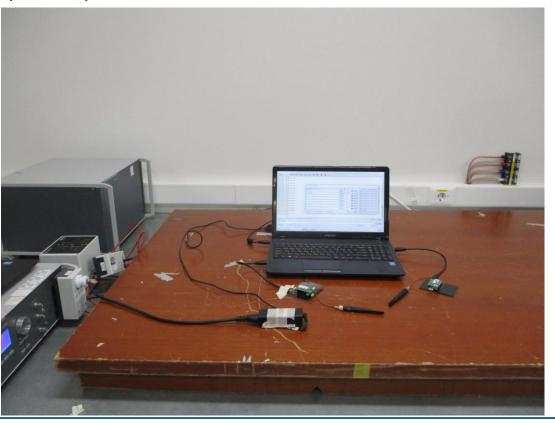


- □ 방사성 RF 전자기장
 - ✓ 방사된 무선 주파수 전자계에 의한 제품의 내성 정도를 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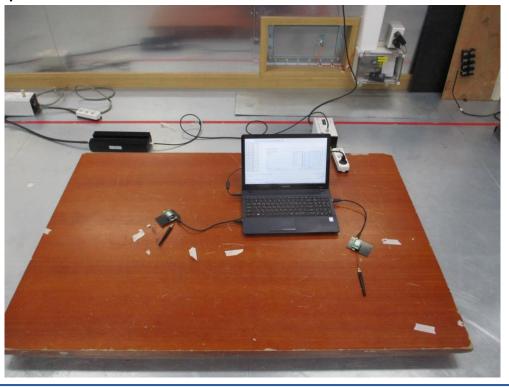


- □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/버스트
 - ✓ 전원공급단자, 신호단자, 제어단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빠른 과도현상/버스트에 대한 제품의 내성 평가





- □ 전도성 RF 전자기장
 - ✓ 150 kHz ~ 80 MHz 주파수 대역에서 RF수신기로부터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전도된 전자기 장해에 대한 제품 내성 정도를 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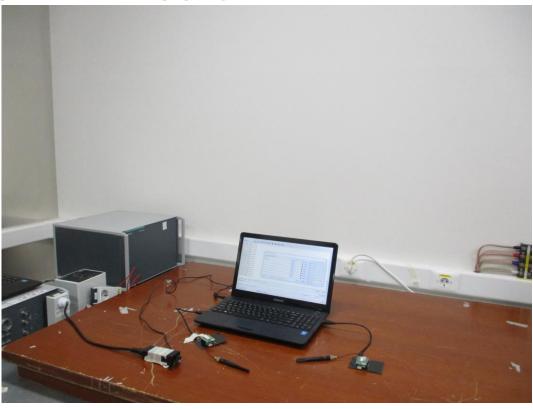


- □ 정전기 방전
 - ✓ 정전기 방전에 의한 제품의 내성 정도를 평가





- □ 전압 강하 및 순간 정전
 - ✓ 전압강하, 순시정전에 대한 제품의 내성 정도 평가





측정 사진

□ 서지

✓ 스위칭 또는 낙뢰의 과도 현상에 의한 전압으로 야기되는 단방향성 서지에 대한 제품의 내성 정도를 평가







